

『충남 생태여행지 10선』

생태관광 명소화 전략

사 공 정 희 · 정 옥 식 · 백 승 희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sun-road@cni.re.kr, oksik@cni.re.kr, bsh114@cni.re.kr

이 연구는 『충남 생태여행지 10선』이 생태분야가 특화된 생태관광지로서 국내 일반 관광지와는 차별되고, 충남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임

CONTENTS

1. 충남 해안경관의 독특성
2. 충남 해안경관의 독특성을 활용한 관광 테마화
3. 해안경관과 연계한 『충남 생태여행지 10선』 전략적 홍보
4. 충남 생태여행지 명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요약

- 녹색 및 환경복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자연환경체험 등 생태관광에 대한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충남은 2017년까지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가 전국 최대 규모이나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새로운 관광테마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충남만의 독특한 생태관광테마를 발굴하여 방문객 수를 유지·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리나라 동쪽의 출중한 산맥과 남쪽의 다채로운 섬들과는 확연히 다른 서쪽 해안경관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연환경을 연계시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즉, 시·군 차원에서의 개별관광지 홍보보다는 충남 광역 차원에서의 생태관광지 연계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해안경관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테마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생태관광 조례를 사례로 충남지역에 적합한 생태관광 관련 조례(안)을 제안하였음

1) 백두대간으로 대표되는 동쪽 경관

- ◆ 우리나라의 동쪽(강원, 경북)은 호랑이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으며, 높고 험준한 산맥이 주요 경관을 대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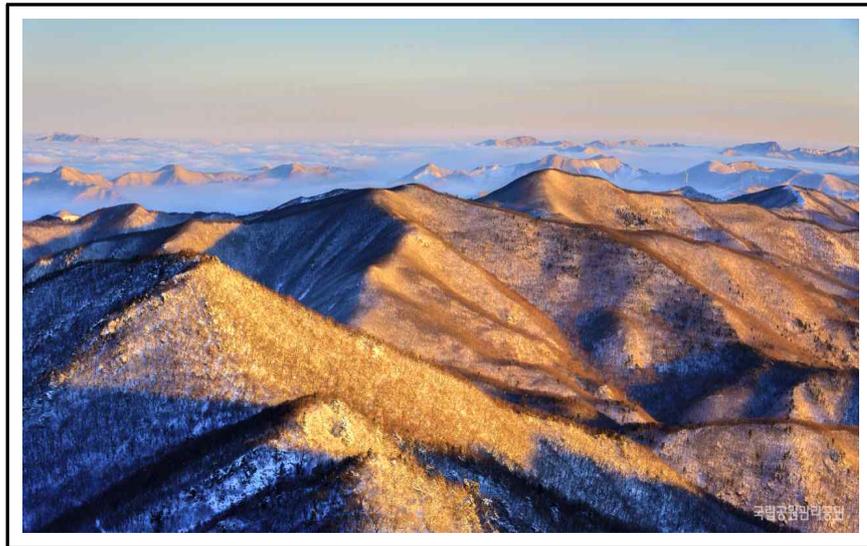


그림 1. 태백산

출처 : 국립공원공단(사진_노재춘)

- ◆ 특히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2002년 10월 산림청에서 선정 공표한 "100대 명산"은 대부분이 동쪽에 분포함
 - 100개 중 47개 산이 동쪽 지역인 강원, 경북, 경남에 분포함
 - 100개 중 31개 산이 서쪽 지역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 분포함

- 31개 산 중 5개 산(계룡산, 대둔산, 덕숭산(수덕산), 서대산, 천태산)이 충남에 분포함
- 5개 산 중 1개 산(덕숭산(수덕산))이 유일하게 충남에만 속함
- ◆ 따라서 동쪽 지역의 경우, 관광의 핵심주제는 험준한 산악이 될 수 있겠음



그림 2. 100대 명산 분포도

출처 : <https://varama.tistory.com/538>

표 1. 우리나라 100대 명산 소재지

NO.	산이름	소재지	NO.	산이름	소재지	NO.	산이름	소재지
1	가리산	강원	35	무등산	광주/전남	69	응봉산	강원
2	가리왕산	강원	36	무학산	경남	70	장안산	전북
3	가야산	경남/경북	37	미륵산	경남	71	재약산	경남/울산
4	가지산	울산/경북/경남	38	민주지산	충북/경북	72	적상산	전북
5	감악산	경기	39	방장산	전남/전북	73	점봉산	강원
6	강천산	전북/전남	40	방태산	강원	74	조계산	전남
7	계룡산	대전/충남	41	백덕산	강원	75	주왕산	경북
8	계방산	강원	42	백암산	전북/전남	76	주흘산	경북
9	공작산	강원	43	백운산(광양)	전남	77	지리산	전북/전남/경남
10	관악산	서울/경기	44	백운산(정선)	강원	78	지리산	경남
11	구병산	경북/충북	45	백운산(포천)	경기/강원	79	천관산	전남
12	금산	경남	46	변산	전북	80	천마산	경기
13	금수산	충북	47	북한산	서울/경기	81	천성산	경남
14	금오산	경북	48	비슬산	대구/경북	82	천태산	충북/충남
15	금정산	부산/경남	49	삼악산	강원	83	청량산	경북
16	깃대봉	전남	50	서대산	충남/충북	84	추월산	전남/전북
17	남산(금오산)	경북	51	선운산	전북	85	축령산	경기
18	내연산	경북	52	설악산	강원	86	치악산	강원
19	내장산	전북	53	성인봉	경북	87	칠갑산	충남
20	대둔산	충남/전북	54	소백산	경북/충북	88	태백산	강원/경북
21	대암산	강원	55	소요산	경기	89	태화산	강원/충북
22	대야산	경북/충북	56	속리산	경북/충북	90	팔공산	경북/대구
23	덕숭산(수덕산)	충남	57	신불산	울산	91	팔봉산	강원
24	덕유산	전북/경남	58	연화산	경남	92	팔영산	전남
25	덕향산	강원	59	오대산	강원	93	한라산	제주
26	도락산	충북	60	오봉산	강원	94	화악산	경기/강원
27	도봉산	서울/경기	61	용문산	경기	95	화왕산	경남
28	두류산	전남	62	용화산	강원	96	황매산	경남
29	두타산	강원	63	운문산	경북/경남	97	황석산	경남
30	마니산	인천	64	운악산	경기	98	황악산	경북
31	마이산	전북	65	운장산	전북	99	황장산	경북
32	명성산	강원/경기	66	월악산	충북	100	희양산	경북/충북
33	명지산	경기	67	월출산	전남	강원/경북/경남 : 47개		
34	모악산	전북	68	유명산	경기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 31개		

: 강원, 경북, 경남에 분포하는 명산

출처 : 산림청



그림 3. 설악산

출처 : 국립공원공단(사진_현우석)



그림 4. 설악산

출처 : 국립공원공단(사진_김용연)

2) 다도해로 대표되는 남쪽 경관

- ◆ 우리나라는 동쪽에 비해 남서쪽의 고도가 낮아 남쪽(울산, 부산, 경남, 전남)과 서쪽(인천, 충남, 전북)에 많은 섬이 분포하며, 특히 남쪽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대표되는 다도해 경관이 대표적임
- ◆ 또한, 남쪽은 서쪽과 달리 수심이 깊어 배를 타고 섬들을 둘러보거나 해상케이블카로 다도해 경관을 즐기는 관광이 성행하고 있음
- ◆ 최근 남서쪽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의 경우는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함께 '전남 관

광객 6천만 명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역시 핵심주제로 해상케이블카를 활용하고 있음

- 국내 대표적인 4대 해상케이블카(삼척해상케이블카,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천바다케이블카, 부산송도해상케이블카) 중 3개(삼척해상케이블카 이외)가 남쪽에 설치되어 있음
 - 통영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와 해남 두륜산케이블카는 해상은 아니지만 역시 남해의 섬경관을 즐기기 위한 케이블카라 할 수 있음
- ◆ 따라서 남쪽 지역의 경우, 관광의 핵심주제는 섬 경관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음



그림 5. 다도해상_백도

출처 : 국립공원공단(사진_황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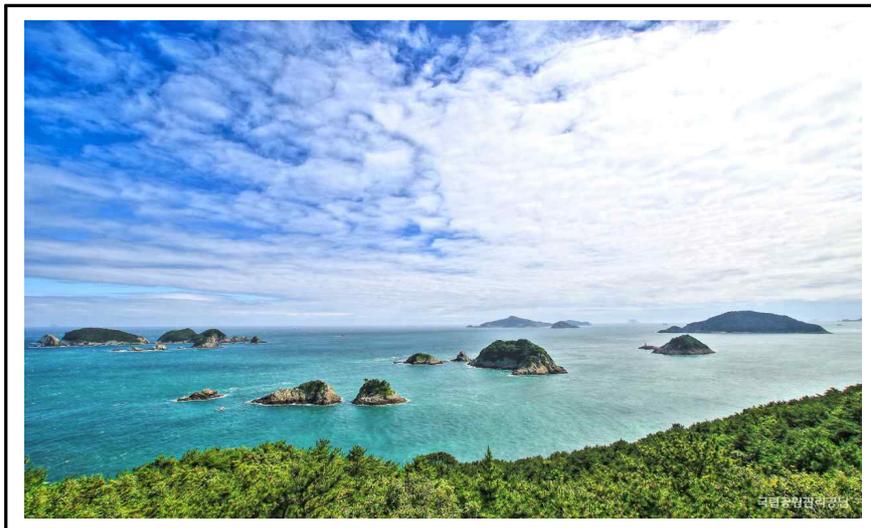


그림 6. 한려해상_대소병대도

출처 : 국립공원공단(사진_최정훈)

3) 독특한 해안경관으로 대표되는 서쪽 경관

■ 갯벌과 철새

- ◆ 서쪽 지역은 산악이 험준한 동쪽 및 수심이 깊은 남쪽과 달리 심한 만조 차의 작품인 갯벌을 보유하고 있음
- ◆ 또한, 갯벌은 기본적으로 생물종다양성이 높아 다양한 철새들이 이동 중 에너지 보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서해의 갯벌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7. 갯벌로 채워진 태안해안(왼쪽)과 물로 채워진 서천_월하성(오른쪽)

출처 : 왼쪽_국립공원공단(사진_장영규), 오른쪽_처음으로(sookyun.tistory.com)



그림 8. 갯벌을 누비는 철새(왼쪽)와 논습지를 누비는 철새(오른쪽)

출처 : 왼쪽_서울신문, 오른쪽_연합뉴스

■ 사구와 배후습지

- ◆ 바다와 육지 사이에 펼쳐진 사구(모래언덕)는 마치 사막의 경관을 연상하게 하며,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서해 경관의 독특함을 부각할 수 있음
- ◆ 사구와 육지 사이에는 또 다른 신비한 배후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 역시 다양한 생물종다양성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 공간임



그림 9. 소항사구와 배후습지

출처 : 소항사구의 오늘_어시스트 안중원(<http://cafe.daum.net/ajwslr/Muxo>)

■ 해안림

- ◆ 서해는 예로부터 겨울 북서풍과 바닷물의 소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방풍림·방조림 등의 해안림이 발달해 있음
- ◆ 해안림은 이러한 기능과 함께 숲 안에서 직접 체험활동도 가능하고, 아름다운 경관도 즐길 수 있는 서해의 독특한 식생 군락이라 할 수 있음



그림 10. 서천 송림산림욕장(왼쪽)과 산온리 해안방풍림 캠핑장(오른쪽)

출처 : 왼쪽_<https://yun-blog.tistory.com/1640>, 오른쪽_레저토피아 지오랜드(<http://jackcoke.devfac.net/?p=169>)

02

충남 해안경관의 독특성을 활용한 관광 테마화

1) 갯벌·철새

'바다 밑 비밀의 땅, 갯벌'

- ◆ 갯벌은 흔히 볼 수 없는 갯벌 특유의 토질과 굴곡 없이 펼쳐진 경관, 그리고 하늘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 등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음
- ◆ 무엇보다 육지와 섬 사이에 바닷물이 채워진 상태와 갯벌이 채워진 상태 모두를 감상할 수 있는 정말 독특한 경관이라 할 수 있음
- ◆ 따라서 충남의 경우, '바다 밑 비밀의 땅', '땅과 섬 사이' 또는 '걸어서 섬까지' 등을 핵심주제로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갯벌 밥상 즐기는 넓적부리도요(봄, 가을)'

- ◆ 일정 기간만 관찰 가능한 철새의 군무를 주제로 지금도 개별 축제가 있지만 이를 충남 광역차원에서의 소재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
- ◆ 울산의 고래관광이나 독도 관광과 같이 실제 보지 못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소성을 강조하여 방문객의 기대감을 높이듯이 철새 종류별 관찰 가능한 기간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희소성을 강조하여 홍보 가능함
- ◆ 즉, 계절별 '갯벌 밥상 즐기는 철새' 또는 '논습지를 누비는 철새' 등을 핵심주제로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사구 · 배후습지

'한국의 사막, 소황사구'

- ◆ 바다와 육지 사이에 펼쳐진 사구(모래언덕)는 마치 사막의 경관을 연상하게 하며,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서해 경관의 독특함을 부각할 수 있음
- ◆ 즉, '한국의 사막, 소황사구' 또는 '서해의 실�크로드 걷기' 등을 핵심주제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함

'사구가 숨겨둔 야생안식처, 배후습지'

- ◆ 사구와 육지 사이에는 또 다른 신비한 배후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 역시 다양한 생물종다양성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공간임
- ◆ 따라서 '해안-사구-배후습지-야생동식물'은 서해안의 중요한 관광테마가 될 수 있음

3) 해안림

'궁궐이 되어준 귀한 소나무'

- ◆ 해안림은 대부분 소나무 계통이며, 특히 태안의 소나무는 조선시대 궁궐을 만드는 주요 목재로서 매우 가치가 높은 것이었음
- ◆ 따라서 이러한 소나무가 주요 수종을 이루는 서해의 해안림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미래의 공기청정기, 해안림'

- ◆ 북서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저감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기대되는 서해 해안림의 중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이러한 서해의 해안림을 경관용, 체험용 등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관광지 발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 해안경관을 다양하게 즐기는 '태안-보령-서천' 코스

서천-보령-태안 : 우리나라 대표 '해안생태관광코스'로 홍보

■ 충남 광역 차원에서의 '해안생태관광코스' 필요

- ◆ 해안과 직접 접해 있는 서천, 보령, 태안의 경우 시·군의 경계를 넘어 해안경관과 연계된 장소로 구성하여 충남 생태관광의 특이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 즉, '태안의 신두리사구와 안면도송림', '보령의 소항사구', '서천의 금강하구'에 대해 개별 장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묶어 충남 광역 차원에서의 홍보도 필요함
- ◆ 예를 들어, '태안 안면도송림-보령 소항사구-서천 금강하구'로 큰 축을 설정하여 '해안림-사막경관-철새'를 하나의 세트(2박3일)로 관광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해안경관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소 연계로 여행코스 확대

- ◆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군 차원에서는 주변의 또다른 해안경관 및 해안경관 관련 교육이나 홍보 장소들만을 선별하여 코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해안경관과 관계성이 낮은 장소는 관광코스에서 제외시키거나 부각시키지 않음으로써 생태관광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음
- ◆ 예를 들어, 태안의 땅끝마을, 보령의 갈매꽃성지(천주교순례길), 서천의 한산모시관 등은 해안경관과 연계성이 낮은 장소이므로 해안생태관광코스에서는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관광코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해안경관의 주요 테마(새)를 즐기는 '서산-예산-서천' 코스

서산-예산-서천 : 우리나라 대표 '철새관광코스'로 홍보

■ 해안경관의 대표 테마인 '철새'를 핵심으로 홍보

- ◆ '서산의 버드랜드', '예산의 황새공원', '서천의 금강하구'는 해안경관의 주요 테마인 '철새'와 연계성이 있으므로 이들 장소를 연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서산과 예산은 태안, 보령, 서천과 달리 대규모의 해안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생태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 오히려 버드랜드와 황새마을 등 생태관광지 1~2곳을 끼워 넣고 지역의 생태관광코스로 홍보하는 것은 방문객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음
- ◆ 따라서 '서산의 버드랜드(국내최대겨울철새도래지)-예산의 황새공원-서천의 금강하구(세계관광기구지정 세계8대철새생태관광지)'로 축을 설정하여 철새 관찰이 가능한 시기, 시간, 장소 등에 대해 희소성을 강조하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3) 충남의 금수강산을 즐기는 '청양-공주-논산-금산' 코스

청양-공주-논산-금산 : 우리나라 대표 '금수강산코스'로 홍보

■ 충남의 해안경관과는 별도로 내륙생태관광지로 홍보

- ◆ '청양의 칠갑산-공주의 계룡산-논산의 대덕산-금산의 금강'을 하나의 코스로 설정하여 '즐거운 산행 이후 금강변에서의 휴식'으로 연결되도록 홍보함
- ◆ 우리나라 동쪽의 산악, 남쪽의 섬, 서쪽의 해안과는 다르게 내륙 요소인 '산과 강'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금수강산관광이 가능함
- ◆ 특히, 금산의 금강은 서천 금강하구의 철새관광과는 달리 천내습지나 적벽강 등 금강의 정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 또한, 자연성이 부족한 한강과 접근성이 낮은 낙동강과도 차별성을 가지므로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하루 머무르는 장소로 금산을 홍보할 수 있음

1) 전국 생태관광 관련 조례

(1) 전국 지자체 생태관광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8개 광역지자체 생태관광 관련 조례 제정

- ◆ 2015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9년 울산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8개 광역지자체가 생태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조례 제정 : 제주도, 대전, 광주,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8개 광역지자체
 - 조례 부재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등 9개 광역지자체

■ 충남은 포괄적 생태관광 관련 조례 없고, 개별 생태관광지 관련 조례 제정

- ◆ 충남은 도 차원에서의 생태관광 관련 조례는 없으며, 타 지자체와 같이 생태적 중요 지역에 대한 개별 조례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음
- ◆ 서천과 태안의 경우 동일 대상에 대해 각각 2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예산과 서산의 경우는 한 지역에 각각 1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운영 조례(2003),
 -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10)
 -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2011)
 -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13)
 -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2016)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2017)

(2) 타 지자체 생태관광 관련 조례 내용 비교

■ 생태관광 관련 계획 수립 분야

- ◆ 8개 지자체 중 전북을 제외한 7곳에서 4~5년 마다(제주 4년, 이외 지자체 5년) 생태관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표 2. 전국 지자체 생태관광 계획 수립 관련 조례 내용

지역	생태관광 관련 계획 내용
제주 [2015]	<p>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략)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10. 생태관광의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1. 생태관광지역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인증, 여행사인증, 생태관광해설사인증 등에 대한 사항 12. 생태관광 자산(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및 생태적 자산 포함)의 보전에 대한 사항 13. 생태관광 주민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14.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 15. 생태관광 주간 및 생태관광 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 16. 생태관광 지표연구 및 현장조사(환경보전적 측면, 주민복지적 측면, 지속가능발전적 측면 등) 1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 [2017]	<p>제4조(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 ① 시장은 (중략)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경남 [2017]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 <http://www.elis.go.kr/>

표 2 계속. 전국 지자체 생태관광 계획 수립 관련 조례 내용

지역	생태관광 관련 계획 내용
<p>경북 [2018]</p>	<p>제5조(생태관광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략) 5년마다 경북 생태관광 지원계획(이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p>
<p>전남 [2018]</p>	<p>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광주 [2019]</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중략)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울산 [2019]</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략) 4년마다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3.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방안 6.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생태관광 교육, 인재 양성과 그 활용 8.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여행사 및 생태관광가이드 인증 9. 생태관광 자산(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및 생태적 자산을 포함한다)의 보전 10.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 11. 생태관광 지표 연구 및 현장 조사(환경보전적 측면, 주민복지적 측면, 지속가능발전적 측면 등) 12.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출처 : <http://www.elis.go.kr/>

- ◆ 생태관광계획의 포함 내용으로는 제주가 17개 항목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고, 울산이 12개 항목, 광주가 9개 항목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음
- ◆ 전체 18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7개 지자체 모두에서 제시하고 있고, 4개 항목은 6개 지자체가, 1개 항목은 4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3. 8개 지자체 생태관광 계획 항목 포함 여부

항목	제주	대전	전북	경남	경북	전남	광주	울산
1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6	●							●
7	●							
8	●				●		●	●
9	●	●		●	●	●	●	
10	●							
11	●							●
12	●							●
13	●							
14	●							●
15	●							
16	●							●
17							●	
18	●			●	●	●	●	●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10. 생태관광의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1. 생태관광 지역지정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인증, 여행사인증, 생태관광해설사인증 등에 대한 사항
12. 생태관광 자산(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및 생태적 자산 포함)의 보전에 대한 사항
13. 생태관광 주민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14.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
15. 생태관광 주간 및 생태관광 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
16. 생태관광 지표연구 및 현장조사(환경보전적 측면, 주민복지적 측면, 지속가능발전적 측면 등)
17.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란색 : 7개 지자체 포함/보라색 : 6개 지자체 포함/빨간색 : 4개 지자체 포함/검정색 : 2~1개 지자체 포함

■ 생태관광 관련 활성화 사업 및 센터 분야

- ◆ 8개 지자체 중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6곳에서 생태관광 관련 센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남과 경남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 대전의 경우는 ‘시장이 생태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제시하고 센터의 기능은 제시하지 않음
- ◆ 센터기능 및 사업으로는 총 19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생태관광 관련 계획과 같이 제주와 울산, 광주가 11개 및 10개 항목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음

표 4. 전국 지자체 생태관광 센터 관련 조례 내용

지역	생태관광 관련 센터 내용
제주 [2015]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중략)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지역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인증, 여행사인증, 생태관광해설사인증 등에 대한 사항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전 [2017]	제5조(사업) 시장은 (중략)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 2.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사업 3.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 사업 5.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제6조(대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중략) 대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북 [2017]	제5조(전북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중략) 전북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 <http://www.elis.go.kr/>

표 4 계속. 전국 지자체 생태관광 센터 관련 조례 내용

지역	생태관광 관련 센터 내용
경남 [2017]	제9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경북 [2018]	제7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중략) 경북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남 [2018]	제12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광주 [2019]	제7조(광주광역시 생태관광지원센터) ① 시장은 (중략) 광주광역시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보전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및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관련 마케팅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지역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인증, 여행사인증, 생태관광해설사인증 등에 대한 사항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10. 그 밖의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울산 [2019]	제11조(울산 생태관광지원센터) ① 시장은 (중략) 울산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7. 생태관광지,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여행사 및 생태관광 가이드 인증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출처 : <http://www.elis.go.kr/>

표 5. 8개 지자체 생태관광 센터 기능 포함 여부

항목	제주	대전	전북	경남	경북	전남	광주	울산
1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5	●	●	●		●		●	●
6	●						●	●
7	●						●	●
8	●	●						●
9	●						●	●
10	●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		●		
18		●					●	
19	●		●		●		●	●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지역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인증, 여행사인증, 생태관광해설사인증 등에 대한 사항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1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13.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14.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15.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16.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17.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
18.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 사업
19.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초록색 : 8개 지자체 포함/파란색 : 7개 지자체 포함/보라색 : 6개 지자체 포함/
 황토색 : 5개 지자체 포함/분홍색 : 3개 지자체 포함/검정색 : 2~1개 지자체 포함

주) 지자체 조례 항목 수와 ●의 수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하나의 항목에 두 개 이상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며, 이를 개별 기능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임

2)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 조례(안) 설정의 기본방향

- ◆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18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4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다음과 같이 8개 항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한편, 1~3개 지자체에서만 제시하고 있는 10개 항목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8개 공통항목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생태관광의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생태관광 지역지정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인증, 여행사인증, 해설사인증 등에 대한 사항
 - 생태관광 자산(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및 생태적 자산 포함)의 보전에 대한 사항
 - 생태관광 주민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
 - 생태관광 주간 및 생태관광 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
 - 생태관광 지표연구 및 현장조사(환경보전 측면, 주민복지 측면, 지속가능발전 측면 등)
 -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 따라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8개 항목을 충남 생태관광 계획 관련 조례의 기본(안)으로 고려하면서 그 외 항목들과의 내용 중복, 포괄적·세부적 의미의 혼재 등을 정비하여 최종 제시해 보고자 함

(2) 생태관광 지원센터 관련

■ 조례(안) 설정의 기본방향

- ◆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19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4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다음의 6개 항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음
 -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생태관광 지원센터’ 관련 공통항목(19개 중 6개)은 ‘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공통항목(18개 중 8개)에 비해 수가 적었으며, 오히려 지자체별 다양하고 구체적인 센터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한편, 1~3개 지자체에서만 제시하고 있는 13개 항목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6개 공통항목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지역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인증, 여행사인증, 해설사인증 등에 대한 사항
 -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
 -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 사업
- ◆ 따라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6개 항목을 충남 생태관광 지원센터 관련 조례의 기본(안)으로 고려하면서 그 외 항목들과의 내용 중복, 포괄적·세부적 의미의 혼재 등을 정비하여 최종 제시해 보고자 함

표 6.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조성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p> <p>제2조(정의)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목표 및 방향 설정 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목표 및 방향 설정 2. 생태관광 자원보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태관광 자산(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및 생태적 자산 포함) 보전 방안 나. 생태관광 기본 프로그램 운영 방안 다. 생태관광의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라. 생태관광 지표연구 및 현장조사(환경보전 측면, 주민복지 측면, 지속가능발전 측면 등) 마.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 3.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태관광 주민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나. 생태관광 주간 및 생태관광 축제 지원 방안 4. 생태관광 기반조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태관광 제도 개선 방안 나.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방안 다.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 방안 라.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 생태관광 지역 지정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인증, 여행사인증, 해설사인증 등에 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6.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제5조(생태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6조(생태관광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6 계속.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p>제7조(생태관광정책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생태관광정책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관광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생태관광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북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태관광 자원보전 및 활성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태관광 자원(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및 생태적 자산 포함) 및 실태 조사 나. 생태관광 기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다.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라.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마. 생태관광 지역 지정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인증, 여행사인증, 해설사인증 등 바. 생태관광 교육 사업 <p>2.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태관광 주민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나. 생태관광 주간 및 생태관광 축제 지원 방안 다.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라.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활성화 <p>3.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 나.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다.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라. 생태관광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마.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교류 및 지원 바.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p>4.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경북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활성화)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제11조 (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울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참 고 자 료

강기환(2018) 태양광발전시스템 민원사례 및 대응전략, 2018 태양광 기술교류 워크숍(2018.7.5.) 발표자료, pp.183-186
사공정희·정옥식·여형범·오혜정. 2016. 충남 광역산림생태축 존속을 위한 지역산림생태축 보전·관리전략. 충남연구원.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3차년도)
충청남도(2013), 제1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4~2017)
충청남도(2019), 제2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7)
환경부. 2008. 금강충청권 및 태백강원권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2327118>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31000007001036&isClose=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31140104219032&isClose=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9000010001049&isClose=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6000015009067&isClose=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000009001045&isClose=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30000007005007&isClose=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30230104310004&isClose=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8000008001063&isClose=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5000031002012&isClose=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50000015004032&isClose=0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